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5.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3. 3. 17.

다. 상 정 일 자 : 2003. 3. 21.(제11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
의견서채택)

2. 제안설명의 요지(도시개발과장 김윤성)

가. 제안이유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페아스콘 등)을 파쇄·선별 등의 중간처리를 통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절약 및 건설폐기물 무단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설현장의 환경을 개선코자 도시계획시설(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신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시 설 명 : 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
- 위 치 : 장림동 914-8번지 일원
- 면 적 : A = 9,741m²
- 용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신 청 자 : (주)부영개발 김동진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4. 토 론 요 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의견서채택

붙임 : 의견서 1부.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한 -
의 건 서

I. 도시계획시설 개요

- 시설명 : 폐기물처리시설(일반폐기물)
- 위치 : 장림동 914-8번지 일원
- 면적 : A = 9,741㎡
- 용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신청자 : (주)부영개발 김동진

II. 청취안에 대한 의견

- 도시계획시설 결정대상지는 과거 비전산업의 산업폐기물을 방치하여 토양이 오염된 지역으로 신청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완전한 처리를 통한 오염원의 제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폐기물처리 시설 용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매립된 오염원의 완전 제거여부의 확인절차 과정을 거친 후 시설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대상부지 중 비교적 형상이 양호한 일부 임야에 대한 훼손 최소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위의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도 시설설치 및 폐기물 처리과정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적장고 신축, 유해물질·소음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등 환경훼손과 주민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수립 및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것임.

2003. 3. .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